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2562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12,284,7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4,7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D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270만 원, 대출기간 2020. 1. 6.부터 2025. 1. 6.까지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외 은행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20. 4. 9.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2020. 7. 21.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7. 30. 소외 은행에 보험금 12,064,962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0. 9. 29.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12,284,795원이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7.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10.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20. 4. 21. 전주지방법원 2020개회1033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1. 2.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5. 1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다.

3) 이 법원은 2022. 3. 22.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전북 완주군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북 완주군 E 대 3576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187㎡

(대지권의 표시)

35766.8분의 48.3339. 끝.

